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 신설〉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2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소회의원 등 2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1.
3. 회부연월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발전·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자 산업·재정·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획임.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에 기반한 정책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현행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상향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개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 ----- ----- ----- <u>거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받아</u> -----. ----- ----- ----- ----- -----.

현행	개정안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⑤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구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¹⁾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발전·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행정계획임.

현행 수립 절차는 실무안 마련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²⁾ 심의를 거쳐 정부 내부적으로 확정되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2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 장기전망, 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 계획, 수요관리 목표 등을 포괄함.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된 위원회.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며, 확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 과정에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부 내부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의 확정 요건으로 입법부의 사전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부의 정책 형성 재량권 및 타 법령상 유사 행정계획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및 타 법률상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수립되는 행정계획으로,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정계획은 행정부의 전문적 판단과 기획 재량을 존중하여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유로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하였음.

실제 국가 재정 전반을 다루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에너지·기후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³⁾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타 분야의 핵심 중장기 행정계획들 역시 국회의 동의가 아닌 '보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의 국회 통제 절차 유사 입법례]

법률명	계획명	국회 통제 절차 (관련 조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가 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제78조제1항)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 운용계획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제7조제1항)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관련 법령 종합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종합계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표와 같이, 타 법률에 따른 주요 국가기본계획의 확정 과정에서도 입법부의 심사 및 동의를 강제하는 입법례는 드문 편임.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한하여 국회 동의를 의무화할 경우, 여타 국가기본계획의 통제 방식과 비교하여 입법적 체계 및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민주적 통제 강화의 실효성과 정책의 적시성 간의 조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

만약 국회 동의 절차가 신설될 경우, 여야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정치적 쟁점으로 인하여 계획 확정이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적기 발전소 건설 및 송전망 확충 등 실물 경제의 투자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반면, 현행 '보고' 위주의 절차만으로는 특정 에너지원(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비중 결정이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임.

따라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상임위 업무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국정감사 등 기존 국회 통제 수단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과 행정 정책 집행의 적시성, 그리고 타 입법례와의 법리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회 동의 절차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